

부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6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홍하진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2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가소102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9. 1. 2.경 뇌출혈로 쓰러지자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원고의 배우자인 D을 기망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2019. 1. 4. 4,000,800원, 같은 달 8. 6,000,640원 합계 10,001,44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0,001,44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를 사기, 절도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는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운영하던 E의 거래처에 육계를 가공, 납품하던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9. 6. 28.경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C는 2019. 1.경 원고의 배우자인 D과 육계의 납품 등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점, C는 피고 명의 계좌를 사업상 대금을 수금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정, 판사 홍준서, 판사 권현영